

심사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53
----------	-----

2019. 9. 2. (월)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이숙애 의원 등 31인

나. 발의일자: 2019년 8월 13일

다. 회부일자: 2019년 8월 14일

라. 상정일자: 2019년 8월 23일

(제3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이숙애 의원)

가. 제안이유

- 일본전범기업은 대일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사과 및 배상을 하지 않고 있음
- 이에 일본 전범기업의 행태를 명확히 인식하고자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표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교직원들의 경각심 고취를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정의(안 제2조)
- 조례의 적용대상(안 제3조)
- 교육감의 책무(안 제4조)
-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안 제5조)
-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대한 인식표 부착(안 제6조)
- 전범기업 제품에 대한 인식 문화 조성(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최경분)

- 본 조례안은 대일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고도 지금까지 이에 대한 공식 사과와 합당한 배상을 하지 않고 있는 일본 전범기업의 행태를 학생과 교직원들이 명확히 인식함으로써,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일본 전범기업 생산 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안 제2조에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에 적용대상 기관과 제품규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대한 인식표 부착 지도를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함
-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일본 전범기업과의 거래 및 제품구매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인식표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에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문화조성에 노력하도록 하였음

- 최근 일본정부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와 백색국가에서의 제외 등 경제적 침략과 도발에 따라 국민의 반일감정이 깊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본 전범기업 생산 제품에 대한 표시를 통하여 역사의식을 강화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

※ 충청북도교육청 전범기업 생산 제품 보유 현황

보유품목	보유수량	취득금액
디지털카메라 외	678점	7억 5,113만원

- 1) 소속기관 및 각급학교 포함
- 2) 교육청 자체 조사자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5. 토 론 요 지: “생 략”

6.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7. 수정안 요지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 8. 23. / 이숙애 의원
- 수정이유
조례안의 취지에 맞게 구매 제한에 관한 문구를 삭제하고, 제품의 형태와 크기에 따라 인식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함
- 수정내용
- 별지서식 인식표의 문구 중 ‘전범기업 제품은 사용연한 이후 재구매 하지 않습니다’ 를 삭제하고, 인식표 하단 안내문을 ‘※ 인식표는 제품의 형태와 크기에 따라 지름 10cm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 수정함

8. 소 수 의 견 요 지: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 (원안)
-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 (원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일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사과 및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 전범기업의 행태를 명확히 인식하고자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명확히 표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교직원들의 경각심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의 “일본 전범기업”이란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조사·발표한 일본기업을 근거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대일항쟁기 당시 일본기업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동원 등으로 국민에게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기업
2. 대일항쟁기 이후에 설립된 일본기업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업의 자본으로 설립되었거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업을 흡수·합병한 기업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간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립의 각급 학교

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기관이 보유 및 사용하고 있는 전범기업 생산 제품을 말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기관이 보유 및 사용하고 있는 전범기업 생산 제품에는 별지 서식의 인식표를 부착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기관이 보유 및 사용하고 있는 전범기업 생산 제품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매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인식표 부착) ① 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전범기업 생산 제품에는 별지 서식의 인식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인식표는 학생 및 교직원이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부착하여야 하며, 해당제품의 불용 시까지 부착하여야 한다.

③ 대상 제품의 크기에 따라 인식표 부착이 불가능할 경우 방법을 달리 하여 전범기업 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제7조(문화조성 등) ① 교육감은 기관이 전범기업과 전범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문화조성을 위하여 문화행사,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충청북도, 유관기관,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인 식 표



※ 본 내용을 포함해 10cm × 10cm 이내의 크기로 변경 사용이 가능합니다.

관 계 법 령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강제동원조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나아가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국가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군무원·노무자·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제1호에 따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8조제3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8조제6호에 따라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
 - 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3조제2항제4호나 이 법 제8조제3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다.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의 경우는 1938년 4월 1일부터 1990년 9월 30일
까지의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4. "국외강제동원 생환자"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국내로 돌아온 사람 중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 해당되지 못한 사람으로서 제8조제7호에 따라 국외강제동원 생환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5. "미수금피해자"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 되어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제8조제6호에 따라 미수금피해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별첨]

국무총리실 발표 전범기업 299개 기업 중 현존하는 전범기업

※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조사

연번	전범기업	연번	전범기업
1	고샤크교통(주)	31	코마츠제작소계열사-
2	(주)교산제작소	32	고마쓰산기
3	(주)구리모토철공소	33	고마쓰NTC
4	(주)나무라조선소	34	KELK(주)
5	(주)단노구미	35	고쿠산전기(주)
6	(주)미라주건설	36	교와핫코기린(주)
7	(주)미야지셀비지	37	구라바야시상선(주)
8	(주)사가미구미	38	구라시에홀딩스(주)
9	(주)오바야시구미	39	구로사키하리마(주)
10	(주)오카베철공소	40	구사카베건설(주)
11	(주)요도시	41	군제(주)
12	(주)후지코시	42	나나오해륙운송(주)
13	JFE계열사	43	나오쓰해륙운송(주)
14	JFE미네탈(주)	44	나이가이(주)
15	JFE스틸(주)	45	나프테스코(주)
16	JFE엔지니어링(주)	46	노무라홍산(주)
17	NS유나이티드해운(주)	47	니가타조선(주)
18	가네마쓰닛산농림(주)	48	니시마스건설(주)
19	가스가광산(주)	49	니혼가단(주)
20	가와사미기선(주)	50	니혼건설(주)
21	가와사키계열사	51	니혼경금속(주)
22	가와사키운송(주)	52	니혼고주파공업(주)
23	가와사키중공업(주)	53	니혼무선(주)
24	가지마건설(주)	54	니혼수산(주)
25	가타야마빈라공업(주)	55	니혼야마무라유리(주)
26	가타쿠라공업(주)	56	니혼우편선(주)
27	간사이기선(주)	57	니혼유리(주)
28	간토전화공업(주)	58	니혼제지(주)
29	고기(주)	59	니혼조달(주)
30	고도제철(주)	60	니혼주조(주)

연번	전범기업	연번	전범기업
61	니혼중화학공업(주)	96	도요그룹계열[3]
62	니혼차량제조(주)	97	도요강관(주)
63	니혼철판(주)	98	도요방적(주)
64	니혼카바이트공업(주)	99	마쓰다주식회사[4]
65	니혼카본(주)	100	도이마린관공(주)
66	니혼통운(주)	101	도치기기선(주)
67	니혼화학(주)	102	도카이고무공업(주)
68	니혼흡(주)	103	도카이기선(주)
69	니혼흡(주)	104	도카йка본(주)
70	닛산화학공업(주)-	105	도쿄가스(주)
71	닛신제강(주)	106	도쿄아사이토방적(주)
72	닛테쓰광업(주)-	107	도쿄제강(주)
73	다마이상선(주)	108	도쿄제철(주)
74	다부치전기(주)	109	도큐차량제조(주)-현JR히가시니혼종합차량제작소
75	다쓰타방적(주)	110	도피공업(주)
76	다오카화학공업(주)	111	도호그룹계열사
77	다이도특수강(주)	112	도호가스(주)
78	다이도화학공업(주)	113	도호아연(주)
79	다이세이건설(주)	114	라사공업(주)
80	다이와홀딩스(주)-가정용기자재주력	115	리코엘레믹스(주)
81	다이요니혼기선(주)	116	린카이닛산건설(주)
82	다이이치주오기선(주)	117	린화학공업(주)
83	다이킨공업(주)-에어컨이주력	118	마부치건설(주)
84	다이헤이요시멘트(주)	119	메이지해운(주)
85	다이헤이요흥발(주)(주)	120	모리나가제과(주)-
86	다치히기업(주)	121	모지향운(주)
87	데이카(주)	122	묘죠시멘트(주)
88	데이코쿠섬유(주)	123	무카이시마독(주)
89	데이코쿠요업(주)	124	미네페아(주)오모리공장
90	뎃켄건설(주)	125	미쓰비시그룹계열사
91	도나미홀딩스(주)	126	미쓰비시금속(주)
92	도다건설(주)	127	미쓰비시상사(주)
93	도비시마건설(주)	128	미쓰비시신동(주)
94	도아건설공업(주)	129	미쓰비시전기(주)
95	도와홀딩스(주)	130	미쓰비시제강(주)

연번	전범기업	연번	전범기업
131	미쓰비시중공업(주)	166	스미토모금속광산(주)
132	미쓰비시창고(주)	167	스미토모오사카시멘트(주)
133	미쓰비시화학(주)	168	스미토모전기공업(주)
134	Nikon(주)-	169	스미토모화학(주)
135	미쓰이금속공업(주)	170	(주)스미토모금속소창-신일본제철과 합병.현재는신일철주금.
136	미쓰이농림(주)	171	스즈요(주)
137	미쓰이마쓰시마산업(주)	172	시나가와리플렉토리즈(주)
138	미쓰이스미토모건설(주)	173	시미즈건설(주)
139	미쓰이조선(주)	174	시미즈해운(주)
140	미쓰이화학(주)	175	신니혼제철(주)-스미토모금속공업과합병 하여신일철주금(신닛테츠스미킹)이됨.
141	(주)도쿄시바우라	176	신니혼카이중공업(주)
142	도시바기계(주)	177	신메이공업(주)
143	이비텐(주)	178	신에쓰화학공업(주)
144	상선미쓰이오션익스퍼트(주)	179	쓰루가해륙운송(주)
145	상선미쓰이조선관리(주)	180	쓰루미(주)
146	빈고통운(주)	181	아라이건설(주)
147	사노야건설(주)	182	아사히유리(주)
148	사와라이즈	183	아사히카세(주)
149	사토공업	184	아소시멘트(주)
150	산텐교통(주)	185	아이사와공업(주)
151	산요특수제강(주)	186	아이치기계공업(주)
152	산코기선(주)	187	아이치시계전기(주)
153	산큐(주)	188	아이치제강(주)-도요타그룹계열사
154	산키공업(주)	189	아즈마해운(주)
155	쇼와KDE(주)	190	아지노모토(주)
156	쇼와비행기공업(주)	191	아키타해륙운송(주)
157	쇼와산업(주)	192	야마분유화(주)
158	쇼와전공(주)[6]	193	야마하-
159	쇼와철공(주)	194	야바시공업(주)
160	스가와라검설(주)	195	양마(주)
161	스미세키홀딩스(주)	196	오사카가스(주)
162	스미토모그룹계열사	197	오사카기선(주)
163	스미토모강관(주)	198	오사카제강(주)
164	스미토모고무공업(주)	199	오지제지(주)
165	스미토모금속공업(주)-현재는신일본제철 과합병하여신일철주금(신닛테츠스미킹)	200	와코도(주)

연번	전범기업	연번	전범기업
201	요시자와석회공업(주)	236	(주)다케나카공무점
202	요코하마고무(주)	237	(주)도쿠야마
203	우베금속(주)	238	(주)리갈코포레이션
204	우베미쓰비시시멘트(주)	239	(주)링코코포레이션
205	우베홍산(주)	240	(주)마루하니치로수산
206	이노항운(주)	241	(주)마쓰무라구미
207	이노해운(주)	242	(주)미쿠니
208	이스즈자동차	243	(주)사쿠션가스
209	이시다(주)	244	(주)세이사
210	이시하라산업(주)	245	(주)세이탄
211	이와타지자키건설(주)	246	(주)신가사독
212	일본건류공업(주)	247	(주)아시텍이리에
213	전기화학공업(주)	248	(주)야노철공소
214	제이와이텍스(주)	249	주에쓰전기공업(주)
215	제팬빅터컴퍼니(주)	250	(주)오에무방기제작소
216	조반홍산(주)	251	(주)오에무제작소
217	(주)가나자키구미	252	주오전기공업(주)
218	(주)가미쓰제작소	253	(주)요도가와제강소
219	주가이광업(주)	254	(주)요타이
220	(주)고노이케구미	255	(주)이케가이
221	(주)고베제강소	256	(주)자판에너지
222	(주)고이케구미	257	(주)제니타카구미
223	주고쿠도료(주)	258	(주)후지타
224	주고쿠전력(주)	259	(주)히타치제작소계열사-
225	(주)구라레	260	히타치조선(주)
226	(주)구마가이구미	261	히타치조선(주)
227	(주)나카야마제작소	262	히타치항공기(주)
228	(주)노가미	263	카미오카광업(주)
229	(주)니치로	264	카본(주)
230	(주)니치린	265	파나소닉(주)
231	(주)니혼제강소	266	폴추
232	(주)닛치스	267	하기모리홍산(주)
233	(주)다이세루	268	하자마구미(주)
234	(주)다이조	269	하카타항운(주)
235	(주)다이헤이제작소	270	하코다테독(주)

연번	전범기업	연번	전범기업
271	한신내연기공업(주)	278	후지보홀딩(주)
272	호도가야화학공업(주)	279	후지전기(주)
273	호쿠에쓰메탈(주)	280	후지중공업(주)-
274	홋카이도탄광기선(주)	281	히노테우편선(주)
275	후루가와기계금속(주)	282	히라니시키건설(주)
276	후루가와전기공업(주)	283	히로시마가스(주)
277	후시키해륙운송(주)	284	히메지합동화물자동차(주)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것으로 기관이 보유 및 사용하고 있는 전범기업 생산 제품에 인식표 부착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에 해당됨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일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사과 및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 전범기업의 행태를 명확히 인식하고자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명확히 표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교직원들의 경각심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의 “일본 전범기업”이란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조사·발표한 일본기업을 근거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대일항쟁기 당시 일본기업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동원 등으로 국민에게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기업
2. 대일항쟁기 이후에 설립된 일본기업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업의 자본으로 설립되었거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업을 흡수·합병한 기업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립의 각급 학교

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기관이 보유 및 사용하고 있는 전범기업 생산 제품을 말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기관이 보유 및 사용하고 있는 전범기업 생산 제품에는 별지 서식의 인식표를 부착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기관이 보유 및 사용하고 있는 전범기업 생산 제품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매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인식표 부착) ① 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전범기업 생산 제품에는 별지 서식의 인식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인식표는 학생 및 교직원이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부착하여야 하며, 해당제품의 불용 시까지 부착하여야 한다.

③ 대상 제품의 크기에 따라 인식표 부착이 불가능할 경우 방법을 달리 하여 전범기업 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제7조(문화조성 등) ① 교육감은 기관이 전범기업과 전범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문화조성을 위하여 문화행사,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충청북도, 유관기관,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인 식 표



※ 인식표는 제품의 형태와 크기에 따라 지름 10cm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별지 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인 식 표</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 본 내용을 포함해 10cm × 10cm 이내의 크기로 변경 사용이 가능합니다.</p>	<p>[별지 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인 식 표</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 인식표는 제품의 형태와 크기에 따라 지름 10cm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p>